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3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3년 6월 22일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다회용품 활용 시설과 관련한 서울시의 계획수립 없이 민간위탁 규정부터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, 안 제7조2의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고,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만 시장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민간의 관련 사업 추진 시, 시장의 행·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(안 제7조제2항).
- 민간위탁 규정 삭제 및 시장의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또는 지원 규정 신설 (안 제7조의2)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 중 “민간기관·단체가”를 “민간기관·단체,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”로 하고, 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의2(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)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.

안 제8조의 제목 “(시민과 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)”를 “(시민 참여 활성화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·홍보 사업 2.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.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.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p>② 시장은 <u>민간기관·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지원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제7조의2(민간위탁)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해당 사무</u></p>	<p>제7조(지원사업) ① (개정안과 같음)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시장은 <u>민간기관·단체,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제7조의2(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)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</u></p>

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.

제8조(시민 참여 활성화)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,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, 민·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8조(시민과 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)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,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, 민·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이 나 무상제공이 가능한 시설이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품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시민 참여 활성화) ① (개정안과 같음)

<삭 제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민간기관·단체가”를 “민간기관·단체,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”로 하고, 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)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·홍보 사업 2.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.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.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p>② 시장은 <u>민간기관·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7조(지원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 민간기관·단체,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----- -----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제7조의2(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)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.</u></p>